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7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 박상혁 · 김윤덕 · 한병도

소병훈 • 정일영 • 신동근

강준현 · 임오경 · 허 영

이정문 · 민형배 · 박재호

최인호 · 유후덕 · 천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동차를 대여·운전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목적으로 운전면허 등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금지되었음.

그러나 본인의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등 무면허자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임.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 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5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차한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2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552호 여객자동차	법률 제175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 <신 설></u>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
	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
	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
	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임차한 자가 법인인 경우</u>
	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3.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u>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